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3,386,339	23,501,590
일반회계		707,961,172	21,238,835
특별회계		75,425,167	2,262,755
	공기업특별회계	35,909,778	1,077,2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909,778	1,077,293
	기타특별회계	39,515,389	1,185,4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60,765	25,823
	자활기금특별회계	2,386,158	71,585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393,000	71,7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1,270	9,038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72,067	8,162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044,161	61,325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2,051	4,862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1,013,500	30,405
	수질개선특별회계	30,082,417	902,47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5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403,07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